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대관규정 시행내규** [ 2008. 4. 8 ]  
규정 제 2 호

개정 2011. 10. 25

" 2015. 12. 24

" 2016. 8. 16

" 2018. 1. 4

" 2019. 10. 2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대관규정에 의거,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여와 무대기술 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0. 29)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는 이 내규를 인정하고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 10. 29)

③ 대관의 범위는 재단의 대관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개정 2019. 10. 29)

**제3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를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 10. 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하며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전문경영인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개정 2019. 10. 29)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 4)

⑤ 재단의 임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⑥ 수시 대관 심의는 재단직원으로 구성된 자체심의위원으로 하며,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한다.(개정 2019. 10. 29)

**제4조(대관신청)** ① 공연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에 공연(전시, 국제회의장 포함)계획서 및 단체연혁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공연대관 이외의 대관인 경우 “대관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②기타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양식에 의한다.

**제5조(대관승인)** ①대표이사는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이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관 승인서” 혹은 “대관불가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②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승인을 통보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재단과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별지 서식 양식에 의한다. 단, 지속적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9. 10. 29)

③공연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계약 후 스태프 회의를 통해 신청한다.

④사용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제6조(대관승인 기준)** ①대관승인 기준은 재단이 대관자의 신청내용과 대관심의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9. 10. 29)

②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재단의 자체기획, 공동기획 공연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2. 경력, 예술적 성과, 공인된 단체 및 개인, 신청서류의 성실도를 우선 고려하여 대관한다.

③정기 및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 호를 준용한다.

④기타의 경우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9)

**제7조(사용시간)** ①재단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 10. 29)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4시간)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시간)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구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구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장기 대관의 경우 공연준비와 공연 회수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의 모든 시간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①사용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다.(개정 2019. 10. 29)

②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관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납입하며, 부대시설사용료를 포함한 나머지 잔금납입은 사용예정일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납부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③수시 대관자는 대관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납입하고, 부대시설사용료를 포함한 나머지 잔금납입은 사용예정일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사용료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6)

④녹음대관, 기타대관과 이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 시에 대관자는 계약체결 동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점유 및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도 계약기준 대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부속 설비 및 무대기술지원 등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정한다.(개정 2019. 10. 29)

⑦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추가사용을 원할 경우 대관자는 추가사용 신청을 요청하고 초과사용료의 납부 시기는 잔금을 납부할 때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잔금 납부이후에 발생한 추가사용료에 한하여 공연 및 행사 종료후 즉시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⑧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차기대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⑨대표이사는 수익성이 높은 대중콘서트 및 흥행성 공연 대관의 경우 사용료로 기본시설사용료의 200%를 징수한다. 흥행성 공연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5. 12. 24)(개정 2019. 10. 29)

1. 순수예술(클래식음악, 연극, 무용, 국악 등)장르를 제외한 오락성 관람물
2. 대중가수의 음악회(콘서트 등 유사 공연물을 포함한다)(개정 2015. 12. 24)
3. 이외 대관 담당부서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정한 공연물(개정 2015. 12. 24) (개정 2019. 10. 29)

⑩재단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제9조(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①대관규정 11조 1항에 따라 재단은 지역예술발전에 공헌한다고 판단되는 순수예술작품 및 공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는 행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1.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법인이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는 전부감면 또는 기본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2. 국가, 경기도 또는 의정부시가 주최,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본시설사용료의 50%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실비개념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납부해야한다. 단 대표이사가 예술진흥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사용료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② 사용료의 감면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장권의 발행)** ①대관 공연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한다.(개정 2019. 10. 29)

②입장권 발행 전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재단은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③입장권 검인시에는 좌석구분표 및 가격표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④입장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또한 좌석 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재단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⑤입장권은 재단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단이 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을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⑥대관자는 입장권 가격 결정시 공연장 내 휠체어석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정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할인요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재단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6)(개정 2019. 10. 29)

⑦재단은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유보하며 그 수량은 대극장 13석(B열 55, 56번, C열 55~63번, D열 49, 50번), 소극장 5석(B열 48~52)으로 한다. 대관자는 입장권의 발행 시 유보석을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⑧제1항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지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대관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0. 29)

⑨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고 사전에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1.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 불가(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제한연령 기재)
2. 공연 전 입장을 원칙(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
3. 공연장 안에서의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4. 공연장 내의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 화환반입 등 금지
5. 공연장 안에서의 휴대용 전화기 및 기타 소음유발 장치 등 사용금지
6. 공연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재단이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개정 2019. 10. 29)

**제11조(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 ①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개정 2019. 10. 29)

②재단은 사용자와 협의를 거친 공연에 한하여 재단회원에게 할인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제12조(공연진행 협의)** ①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 및 행사개시 일주일 전까지 재단이 주최하는 스태프회의에 관련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대관자는 공연 프로그램 또는 작품세부계획안을 지참하고 무대기술 및 방염관련 등 관련서류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 ②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작업일 전까지 재단 무대운영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9. 10. 29)
- ③사용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한다.(개정 2019. 10. 29)
- ④사용자는 재단의 요청이 있을시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출입증 패용 명단을 공연개시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고 대관자가 제작한 출입증은 재단으로부터 검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29)
- ⑤대관자는 공연 또는 행사진행에 필요한 안내원을 재단의 지시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 ⑥공연진행은 공연개시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한다.

**제13조(공연홍보)** ①사용자는 재단을 통한 홍보에 관해 재단 홍보마케팅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10. 29)

- ②재단을 통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공연 15일 전까지 홍보물, 공연 안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 ③사용자는 공연 3일전 또는 공연당일까지 프로그램 25부와 포스터 5매를 재단에 제출해야한다.(진행용 프로그램 20부, 재단보관용 프로그램 5부, 재단 보관용 포스터 5매)(개정 2019. 10. 29)
- ④공연장내 객석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일체 게시 할 수 없다. 필요에 따른 게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19. 10. 29)
- ⑤대관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개정 2019. 10. 29)
- ⑥재단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규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 ⑦대관자는 전당에 게시한 각종 홍보물(전단, 포스터, 현수막 등)을 공연종료 후 1일 이내에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일금삼만원정(₩30,000-)을 재단에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금은 계약기간내 철거 완료 후 대관자에게 반환된다. 단 대관자가 계약기간 내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제14조(방송 및 판촉, 부대행사 등)** ①재단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단과 사전 협의

의하여야 하며, 특히 촬영 및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재단에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0. 29)

②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사인회 등)는 공연과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상업적이라고 판단되는 판촉물 및 판촉활동은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재단소재지로 한다.(개정 2019. 10. 29)

**제16조(내규위반시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내규의 효력)** 이 내규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8조(규정의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개정 2019. 10. 29)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한 것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2011.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1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개정 2011. 10. 25, 2015. 12. 24)(개정2016. 8. 16)  
(개정 2018. 12. 11)(개정 2019. 3. 16)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단 위	사용료 (천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	스타인웨이 4-4-0	1회	70	* 부대시설 1회라 함은 리허설 및 각 공연1회를 말함.	
	야마하 4-4-2	1회	50		
	피치변경	1회	100		
무대	오케스트라 피트	1회	50	* 조율비는 조율업체에 별도지급	
	이 동 무 대	1회	30	- 공연 전 조율하는 것이 원칙	
	승 강 무 대	1회	50	(단, 확인서 작성 후 조율 생략 가능)	
	덧 마 루	기본	50	* 법인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조율	
	합창라이저3단(추가)	1회	50	※ 각 피아노의 조율피치는 고정.	
	댄스플로어	대극장	1회	120	(변경사용요청시 100,000원 별도 부담)
		소극장	1회	70	* 덧마루
	음향반사판(대극장)	1회	50	- 기본 90sqm/92.4㎡(약 28평)	
	프론트스크린(고정)	1회	20	- 추가 30sqm/ 33㎡(약 10평)	
	리어스크린(고정)	1회	20	- 설치 및 해체 사용자 부담	
	백샤, 흑샤	대극장	1회	30	- 전환시 인력 편성 사용자 부담
		소극장	1회	20	* 댄스플로어 작업시 인건비 및 소모테이프 사용자 부담
	병풍(매화, 십장생)	1회	100	* 병풍 사용시 인건비 사용자 부담	
	화문석	대	1회	20	* 스태프(무대크루)비용 별도 부담.
소		1회	10		
음향	다이나믹 마이크	1대	3	* 다이나믹 마이크 5대 무료 (추가 1대당)	
	콘텐서마이크	1대	5		
	무선마이크	1대	20		
	빔프로젝트	10000ANSI	1회		120
		6000ANSI	1회		80
	이동용 장비	1회	100		* 동시통역시설기, 무선마이크
	전시장 음향장비	1회	50		бат데리는 사용자 부담(AA 1.5V)
	대극장음향콘솔	1회	200		* 빔프로젝트 사용시 노트북 지참
동시통역 수신기	1대	2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대관규정 시행내규

조명	기본조명	대극장	1시간	50	* 무대조명시설의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 용료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재료비 사용자부담 * 대중공연시 발전 차 의무사용
		소극장		40	
	FOLLOW PIN		1회	30	
	썬 효과 조명기		1대/1회	10	
	무빙라이트		1대	30	
	파니프로젝트		1대	30	
	PAR	64(1kw))	1대	2	
		46(250w)	1조(8대)	5	
	웨이브머신		1대	10	
	포그머신		1회	10	
	드라이아이스머신		1회	10	
	블랙라이트		1대	10	
	ERS (SOURCE FOUR)	대극장 (기본 15대)	기본 초과시 1대당	3	
		소극장 (기본 12대)			
	COLOR SCROLLER		1대	5	
STROBE(ATOMIC3000)		1대	10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대관규정 시행내규

기 타(개정 2011. 10. 25)(개정 2016. 8. 16)(개정 2018. 1. 4)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단 위	사용료 (천원)	비 고
냉방	대극장		1시간	65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2시간 (예열시간 1시간포함)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한다.
	소극장			45	
	전시장			20	
	국제회의장			30	
난방	대극장		1시간	60	
	소극장			40	
	전시장			10	
	국제회의장			20	
촬영·기타	영화, CF 등 촬영	대극장	1시간	500	* 귀빈실 1회 단위 * 현수막은 게첨비 외 대관 내규 제13조 7항의 예치금 별도 * 현수막 설치, 철거 사용자 부담 * 냉·난방은 별도 사용료로 함 (귀빈실 제외)
		소극장		300	
		전시장		200	
		국제회의장		200	
		로비		200	
		야외		100	
	T V 중 계		1시간	100	
	인터넷, 라디오중계			80	
	귀 빈 실		1회	30	
	현수막 외벽		1개	30	